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36호 2018. 3. 14.(수)

선 결	기관의 장
--------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21호 취재 편의제공 등에 관한 규정 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27호 (교통시설:중로3-17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8-28호 (교통시설:중로3-40호)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
 거창군 고시 제2018-30호 도로명 주소 개별 고시 1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353호 공인폐기 등록 공고 15
 거창군 공고 제2018-367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익스트림) 16
 거창군 공고 제2018-369호 (공공청사:보건소)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9
 거창군 공고 제2018-381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공고 22

회 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18년 3월 14일

거창군 훈령 제421호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정 홍보와 건전한 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거창군정 취재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거창군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지: 한국 ABC협회 최근 발표기준 발행부수 3천부 이상이면서 경상남도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신문: 거창군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사
4. 통신사: 경상남도에 취재본부를 두고 있는 통신사

제3조(군정취재 언론사 등록) ① 거창군정 취재(이하 “군정취재”라 한다) 언론사 등록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언론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가 제5조에 해당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4조(군정취재 편의 제공) ① 거창군수는 군정홍보를 위한 브리핑 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브리핑 룸은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 가능하고, 거창군에서는 군정 취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군정취재 편의 제공 등 불허) 출입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 대표·발행인 (타인명의 운영 포함)이 언론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공갈, 금품수수 등)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모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군정 취재와 브리핑 룸 이용을 불허한다.

1. 신병이 구속되어 있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류 중일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제6조(제공 불허된 보도자료의 재배포 금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제공받은 언론인이 제5조의 사유로 편의 제공이 불허된 자에게 보도자료를 재배포한 경우에는 제3조의 등록을 취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등록한 군정취재 언론사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고시 제2018 - 2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2008.09.17)로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 3-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8. 03. 08.

거 창 군 수

1. 사업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설도로공사 (군도16호선)	신원면	덕산	중로	3	17	1,145	12	43,763	신원면 덕산리 산188	신원면 덕산리 359-3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사업기간 변경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3. 사업기간

- 당 초 : 2011.11.04 ~ 2017.12.31
- 변 경 : 2011.11.04 ~ 2018.06.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붙임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055-940-5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명	주소	성명	
1	거창	신원	덕산	산187-6	도로	30	30		거창군				
2	거창	신원	덕산	산188	도로	397	397		거창군				
3	거창	신원	덕산	산187-4	도로	494	494		거창군				
4	거창	신원	덕산	1526-1	도로	840	840		국(건설부)				
5	거창	신원	덕산	1389-1	도로	111	111		거창군				
6	거창	신원	덕산	1388-2	도로	598	598		거창군				
7	거창	신원	덕산	산189-4	도로	830	830		거창군				
8	거창	신원	덕산	1388-1	도로	6	6		거창군				
9	거창	신원	덕산	산189-5	도로	131	131		거창군				
10	거창	신원	덕산	1525-1	구거	272	272		국(농림수산부)				
11	거창	신원	덕산	1400-4	도로	309	309		거창군				
12	거창	신원	덕산	산191-4	도로	308	308		거창군				
13	거창	신원	덕산	1499-1	구거	243	243		국(농림수산부)				
14	거창	신원	덕산	359-3	도로	383	383		거창군				
15	거창	신원	덕산	산187-8	임야	756	756	진주시 동성동 201	송병문				
16	거창	신원	덕산	산187-7	임야	238	238	진주시 동성동 201	송병문				

17	거창	신원	덕산	1389-3	답	744	744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18	거창	신원	덕산	1388-3	답	1,504	1,504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19	거창	신원	덕산	산189-6	임야	1,388	1,388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0	거창	신원	덕산	1399-2	답	76	76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1	거창	신원	덕산	1400-3	답	822	822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2	거창	신원	덕산	1399-1	답	118	118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3	거창	신원	덕산	산189-7	임야	506	506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4	거창	신원	덕산	산214	구거	67	67		국(농림수산부)				
25	거창	신원	덕산	산195-2	임야	850	8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6	거창	신원	덕산	산191-2	임야	5,565	5,565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7	거창	신원	덕산	산193-4	임야	3,296	3,296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8	거창	신원	덕산	산195-3	임야	2,505	2,505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9	거창	신원	덕산	산197-3	임야	4,998	4,998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0	거창	신원	덕산	산198-4	임야	2,720	2,72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1	거창	신원	덕산	산197-5	임야	978	978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2	거창	신원	덕산	산199-4	임야	3,340	3,34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3	거창	신원	덕산	산200-3	임야	2,123	2,12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4	거창	신원	덕산	산47-1	임야	388	388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5	거창	신원	덕산	396-1	전	63	6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6	거창	신원	덕산	361-1	전	482	482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7	거창	신원	덕산	360-1	전	369	369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8	거창	신원	덕산	산48-4	임야	3,063	3,06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39	거창	신원	덕산	산45-6	임야	1,834	1,834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40	거창	신원	덕산	359-2	전	11	11		박희조				미등기
41	거창	신원	덕산	산45-8	도로	7	7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18 - 2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81호(2011.11.04)로 최초 실시계획인가한 거창군계획 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3. 8.

거 창 군 수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8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 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	가북면 박암리 686-4번지 일원	중로	3	40	1,257	12	당초 27,075 변경 30,150	가북면 몽석리 686-4	가북면 몽석리 1197-2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사업 면적 및 기간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5. 사업기간

○ 당초 : 2012.12.14~2017.12.31

○ 변경 : 2012.12.14~201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붙임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건설과 및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성 명 / 주 소)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지 적		편 입		
							대 장	기정	변경		
합 계							165,840	27,075	30,150		
1	거창	가북	박암	690-3	도로	도로	576	77	77	김상철 / 대구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23	
2	거창	가북	박암	690-2	도로	도로	3,467	888	888	거창군	
3	거창	가북	박암	686-4	전	도로	235	227	227	거창군	
4	거창	가북	박암	684-1	대지	도로	195	195	195	거창군	
5	거창	가북	박암	683-3	대지	도로	220	220	220	거창군	
6	거창	가북	박암	683-1	도로	도로	9	9	9	거창군	
7	거창	가북	박암	1317	도로	도로	4,671	196	196	국토교통부	
8	거창	가북	박암	683	대지	도로	135	135	135	거창군	
9	거창	가북	박암	산142-1	임야	도로	67	67	67	거창군	
10	거창	가북	박암	산143-1	임야	도로	326	326	326	거창군	
11	거창	가북	박암	682	대지	도로	430	430	430	거창군	
12	거창	가북	박암	681	대지	도로	231	231	231	거창군	
13	거창	가북	박암	680	대지	도로	436	333	333	거창군	
14	거창	가북	박암	산144	임야	도로	1,869	1,132	1,869	거창군	
15	거창	가북	박암	산145-3	도로	도로	24,314	8,984	12,020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16	거창	가북	박암	산145-5	도로	도로	689	689	689	거창군	
17	거창	가북	박암	산145-7	임야	임야	654	35	-	박종환외7인/부산 동래구 사직동 시영 21-303	
18	거창	가북	박암	산145-8	임야	도로	2,745	2,661	2,745	거창군	
19	거창	가북	박암	산148-3	도로	도로	77	61	61	거창군	
20	거창	가북	박암	산148-4	도로	도로	210	206	206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성 명 / 주 소)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지 적		편 입			
							대 장	기정	변경			
21	거창	가북	박암	산148-5	도로	도로	238	211	211	거창군		
22	거창	거북	박암	산153-6	도로	도로	296	289	289	거창군		
23	거창	거북	박암	산153-7	도로	도로	816	37	37	거창군		
24	거창	거북	박암	산103-3	유지	유지	35,088	761	761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25	거창	가북	몽석	1723-1	도로	도로	109	83	83	거창군		
26	거창	가북	몽석	1723-2	도로	도로	33	28	28	박능술 / 미등기	미등기	
27	거창	가북	몽석	산79-3	도로	도로	3,138	1,006	1,006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28	거창	가북	몽석	산79-2	도로	도로	99	92	92	천덕원 / 전북 남원군 남원면 천거리	미등기	
29	거창	가북	몽석	산80-2	도로	도로	496	496	496	김경호 /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미등기	
30	거창	가북	몽석	1944	도로	도로	2,757	591	591	국토교통부		
31	거창	가북	몽석	1708-2	도로	도로	53	24	24	김상기 / 미등기	미등기	
32	거창	가북	몽석	산81-3	도로	도로	397	372	372	김진기 / 미등기	미등기	
33	거창	가북	몽석	1153	전	전	397	38	38	김진희 /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576		
34	거창	가북	몽석	1153-1	도로	도로	23	23	23	거창군		
35	거창	가북	몽석	산81-13	임야	임야	75	75	75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36	거창	가북	몽석	1154-1	전	전	198	48	48	김진희외2인 /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566		
37	거창	가북	몽석	1154-2	도로	도로	172	172	172	거창군		
38	거창	가북	몽석	산81-9	도로	도로	20	20	20	거창군		
39	거창	가북	몽석	산81-12	임야	임야	268	268	268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40	거창	가북	몽석	산81-2	도로	도로	198	177	177	김진기 / 미등기	미등기	
41	거창	가북	몽석	산81-5	도로	도로	292	292	292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42	거창	가북	몽석	산81-8	도로	도로	107	107	107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성 명 / 주 소)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지 적		편 입			
							대 장	기정	변경			
43	거창	가북	몽석	산82-1	도로	도로	153	153	153	거창군		
44	거창	가북	몽석	산82-3	임야	임야	252	252	252	김동도 /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0	미등기	
45	거창	가북	몽석	1159-2	도로	도로	1,956	1,956	1,956	거창군		
46	거창	가북	몽석	1159-3	전	전	77	22	-	경상남도		
47	거창	가북	몽석	1156-4	전	전	37	33	37	김보권 / 미등기	미등기	
48	거창	가북	몽석	1158-3	도로	도로	15	15	15	김정길 / 거창군 거창읍 소만1길 16-5		
49	거창	가북	몽석	1158-4	전	전	157	157	157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50	거창	가북	몽석	산82-2	임야	임야	175	175	175	김동도 /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0	미등기	
51	거창	가북	몽석	1179-1	답	답	60	60	60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52	거창	가북	몽석	1179-3	대	대	22	22	-	경상남도		
53	거창	가북	몽석	1181-1	답	답	436	340	340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54	거창	가북	몽석	1180-1	임야	임야	53	53	53	변희석 /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미등기	
55	거창	가북	몽석	1180-3	전	전	238	238	-	경상남도		
56	거창	가북	몽석	산92-2	도로	도로	198	198	198	김대기 / 미등기	미등기	
57	거창	가북	몽석	산92-3	도로	도로	416	380	380	거창군		
58	거창	가북	몽석	산92-4	임야	임야	120	120	120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59	거창	가북	몽석	1197-2	도로	도로	755	577	108	거창군		
60	거창	가북	몽석	1925	하천	하천	73,894	12	12	국(건설부)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0	12	집산 도로	13,505	중로2-30 호선	가북면 용암리 산132-1	일반 도로	가북 우회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도로 선형 변경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40호선	중로 3-40호선	•도로 선형 변경(면적변경) (연장 변경없음)	• 가북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도로 선형 일부 변경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1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40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폐기 ·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8.

거창군수

1. 등록사유: 기금 명칭 변경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 3. 9.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양성평등기금출납원인	1.8cm × 1.8cm	

4.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여성발전기금출납원인	1.8cm × 1.8cm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2017.8.24.)로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나) 명 칭 : 궤 도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 사업규모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궤도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27,870.0	13,953.0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7,801.0	7,801.0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4.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산림과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12.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궤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1,043	13,953					
1	고제면 개명리	2051-13	주	7,964	3,475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51-14	잡	1,944	492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22-29	임	13,822	486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68	강삼석	근저당권 지상권	거창군산림조합	
4	고제면 개명리	산19-12	임	10,762	4,559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1	황윤구			
5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6,551	4,941		국토교통부			

○ 주차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0,457	7,801					
1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6,551	3,492		국토교통부			
2	고제면 개명리	2036	도	675	675		국토교통부			
3	고제면 개명리	산19-20	임	2,461	2,461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36-1	전	535	535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23	임	120	120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산19-21	임	9,616	78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1	황윤구			
7	고제면 개명리	2037-3	전	79	79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19-29	임	420	361		거창군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4-4(2014.1.9)호로 최초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0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보건소)
 - 명 칭 : 공공청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가. 부지면적 : 6,859.3㎡
 -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 면적	금회시행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청사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079번지	6,859.3	6,859.3	당초1,635.84 변경1,818.02 증182.18	당초3,101.19 변경3,578.89 증477.7	경고 제2014-249호 (2014.07.10.)	

4. 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보건소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06. 30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859.3	3,859.3					
1	거창읍 거함대로	3079	대	3,859.3	3,859.3		거창군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짖이 사랑방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거창군수

1. 지정 연월일 : 2018. 3. 12.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명칭 · 위치 및 규모

○ 명 칭 : 베짖이 사랑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85-1 등 8필지

○ 규 모

- 체험시설 연면적 559.765m²(민박, 체험,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대 표 자	주 소
최 용 환	경상남도 거창군 원학길 159-**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 · 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 · 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조건

사업자는 베짱이 사랑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에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

일반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거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거창군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I

재산 관리

-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사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Ⅲ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군수는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상기사유 이외에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IV

운영 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군수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군수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① 체험안전보험
 - ② 화재보험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거창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등) 등]은 베짱이 사랑방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베짱이 사랑방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군수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또한 군수는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실적관리시스템 (<http://www.rucos.kr>)시스템에 매월 익월 10일 이내에 사업실적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 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 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 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운영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식당시설을 하는 경우)

도농교류법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은 도농교류법에 따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며, 장소 및 시설은 타법의 저촉이 없어야 함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20만원